

의안번호	2200087
의 퇴 인	이원택의원
회 답 일	2024. 6. 3.
추 계 번 호	24B030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0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5,100만원(연평균 1,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설치·운영(안 제40조의2 신설)	10	10	10	10	10	51	10

주: 1. 舊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사례 참고

2.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4조제2항 제6호 신설(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u>6.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및 재정 지원</u>	의무규정
2	안 제40조의2 신설(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농가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둠(제1항)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제2항) 1. 농가의 소득안정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농가의 소득안정에 필요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3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14조제2항 제6호 신설(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	• 미대상 － 개정안의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에 따른 법정 계획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단계에서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연구용역 비용> (단위: 백만원) <table><tr><th>연번</th><th>연구용역 과제명</th><th>공고시기</th><th>공고금액</th></tr><tr><td>1</td><td>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 방안 연구</td><td>2022.5</td><td>160</td></tr><tr><td>2</td><td>제4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td><td>2022.5</td><td>40</td></tr></table> 자료: 조달청 나라장터 － 또는 농촌정책국의 정책연구개발사업(R&D) 내 정책연구비(260-02)를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정책연구개발사업 예산 현황: 2021~2024년> (단위: 백만원) <table><tr><th></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tr><td>정책연구개발사업(7031-300)</td><td>2,358</td><td>2,476</td><td>2,352</td><td>2,117 (43개 과제 ×49백만원)</td></tr></tabl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 2024.1.	연번	연구용역 과제명	공고시기	공고금액	1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 방안 연구	2022.5	160	2	제4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2022.5	40		2021	2022	2023	2024	정책연구개발사업(7031-300)	2,358	2,476	2,352	2,117 (43개 과제 ×49백만원)
연번	연구용역 과제명	공고시기	공고금액																						
1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 방안 연구	2022.5	160																						
2	제4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2022.5	40																						
	2021	2022	2023	2024																					
정책연구개발사업(7031-300)	2,358	2,476	2,352	2,117 (43개 과제 ×49백만원)																					
2	안 제40조의2 신설(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 유사사례 참고 (舊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사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설치·운영(안 제40조의2 신설)

-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에 21명 이내의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본 추계는 과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¹⁾ 제16·17조²⁾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운영된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
- 1) 국회는 2019년 12월 27일, 공익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제373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2404호)을 가결하였음
- 제명 변경: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58호, 2019.12.31., 전부개정] [시행 2020.5.1.]
- 개정이유: 2020년부터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여,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여 쌀 수급균형을 회복하는 한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
- 2) 舊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6조(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목표가격·고정직접지불금·변동직접지불금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의2.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24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7조(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차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농업인단체의 대표 5명 이내
나.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대표 및 언론인 5명 이내
다. 농업 및 경제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5명 이내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2] 舊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사례

구분		내용
위원회 명칭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설치근거 및 시행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6조('15. 1. 1.) * 위원회 구성당시 근거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05.7.1.)
설치목적		·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 심의
기능		·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 목표가격·고정직접지불금·변동직접지불금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 (총 21명)	위원장 (1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당연직 (총 5명)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기획재정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 5명
	위촉직 (총 15명)	(직 중) 농업인단체 5명, 소비자 단체 및 언론인 5명, 학계 및 전문가 5명 (별도구분) 여성 8명(53.3%), 비수도권 4명(26.7%), 현장전문가 5명(33.3%)
이전 3년간 회의개최 실적		2016년 2회/ 2017년 2회/ 2018년 2회
예산집행		별도 편성예산(인건비, 운영비 등)은 없으며 외부위원 1명당 심의 수당 10만원 지급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따라서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 21명으로 구성되고, 이 중 민간위원 수는 17명으로 가정³⁾
 - 농업인단체의 대표 7명, 소비자단체의 대표 5명, 농업 및 경제 관련 학계 5명
- 회의개최 횟수는 과거 사례를 참고하여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3) 안 제40조의2(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④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2호에 따른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농업인단체의 대표 7명 이내
나.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대표 5명 이내
다. 농업 및 경제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5명 이내

- 회의참석 사례금(안전 검토비 등 포함)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⁴⁾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추계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5,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명, 회, 만원/명·회,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농가소득안정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민간위원 수(A)	17	17	17	17	17	—
	회의개최 횟수(B)	2	2	2	2	2	—
	사례금 단가(C)	30	30	30	30	30	—
추가재정소요 (D=A×B×C)		10	10	10	10	10	51

주: 1. 민간위원 수는 개정안을 고려하여 17명으로 가정
 2.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 5., 218쪽)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